



자주하는 질의 답변



제도 일반

Q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면 안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

- ▶ 아닙니다.
-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Q2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Q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나요?

- ▶ 처벌을 받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죽제품

Q1 인조가죽은 가죽제품에 포함되는데 인조모피도 가죽제품에 왜 포함되지 않나요?

- ▶ 가죽제품이 아닌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됩니다.
- 인조모피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과 같은 섬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

Q2 실내 바닥에 까는 러그의 재질이 인조피혁(PU) 1장에 친환경UV인쇄 후 특정 형태로 재단한 것인데, 인증대상인가요?

-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폴리우레탄계러그는 가죽제품(인조가죽)으로 분류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가죽제품에 해당합니다.

Q3 사무실 슬라이퍼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안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죽제품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가죽재질일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기준준수대상 가죽제품(안전기준 부속서3)에 해당됩니다.

합성수지제품

Q1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신청 시 제품의 모양은 동일하나 색상이 다를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 색상이 다를 경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재질, 색상은 동일하나 모양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 ▶ 동일한 재질, 색상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에서 유해물질 안전요구 사항 적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겉모양의 경우는 모양이 다른 제품 모두 적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슬리퍼는 아무런 안전요건 기준이 없나요?

- ▶ 주 재질의 종류에 따라 안전요건이 달라집니다.
- 주 재질이 섬유 및 섬유의 원료인 경우 안전기준 준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며 가죽이 제품에 60% 이상인 경우 안전기준준수 가죽제품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4 유아용,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 합성수지제품에 해당하나요?

-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기타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 유아용,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구

Q1 인테리어 벽선반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인지?

- ▶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형 가구(예 :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안전기준준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글라스

Q1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이 탑재된 선글라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가요?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선글라스에 해당합니다.
-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성능(자외선 차단 기능 등)과 유해물질 용출량 등이 동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품을 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블루투스 등 전자적 기능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담당 부서(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용 지팡이

Q1 구조(치수) 항목에서 고무두께 측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지요?

- ▶ 고무를 몸체에서 분리 후 단면적을 봤을 때, 금속제 걸림쇠가 맞닿는 면에서부터 바닥면(모든 돌기 제외) 부를 측정한 후 결과로 합니다.

Q2 고령자용 지팡이 경우 공급자 적합성에서 안전기준 준수로 변경 되었는데, 시험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 ▶ 제품시험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Q3 고령자용 지팡이 종류중 접이식과 조절식이 모두 해당하는 제품은 시험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종류가 다르더라도 접이식과 조절식에 해당하는 구조의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고령자용 지팡이로 안전기준 준수 시험을 받기 위한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시각장애이용 지팡이를 제외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모두 대상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Q1 스프링 매트리스에 폼 또는 라텍스가 상부에 결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내구성 및 수직하중 시험을 해야 하는지?

- ▶ 내구성, 수직하중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 구성층이 스프링 매트리스이고 보충재의 역할로서 라텍스 또는 폼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내구성, 수직하중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산

Q1 안전기준의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닐 재질의 우산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이 되는지요?

- ▶ 투명한 비닐(EVA재질)로 제조된 우산의 경우, 일회성 용도의 우산은 아니므로 안전기준 준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Q2 골프용 양산 또는 우산 · 양산 겸용으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도 자외선 차단율 표시가 필수인지 여부.

- ▶ 골프용 우산 또는 양산 겸용 제품의 정의는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살의 길이가 해당 기준보다 긴 경우에만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함.

접촉성 금속 장신구

Q1 성인용 손목시계인데 시계줄이 가죽이라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 ▶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및 가죽제품에 모두 해당됩니다.
- 손목시계의 경우 시계몸체의 경우는 피부접촉부위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고 버클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접촉되는 금속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품목 ‘접촉성 금속 장신구’기준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죽 시계줄의 경우는 동일한 법에서 ‘가죽제품’에 해당되므로 두 가지의 안전기준에 만족된 제품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Q2 성인용 헤어밴드인데 외부는 천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금속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KC 인증 대상이 되나요?

- ▶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헤어밴드 내부에 금속대가 있고 그 외부전체를 섬유로 감싼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금속이 없는 제품으로 판단되며, 이런 제품의 경우는 KC인증대상 제품이 아닙니다.

Q3 은으로 만든 장신구도 대상인가요?

- ▶ 은의 함량이 92.5% 이상인 경우에는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목걸이도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포함되나요? 포함되는 경우 어떤 시험항목을 진행하나요?

▶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목걸이는 금속제품이 아니므로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용섬유제품

Q1 합성수지제 신발은 어떤 시험항목이 진행되나요?

▶ pH, 폼알데하이드 시험항목이 적용됩니다.

Q2 형광증백제와 관련한 시험항목은 없나요?

▶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안전요건에 형광증백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카페트, 러그, 양탄자 제품의 뒷면(backing)재질이 고무제, 라텍스(합성고무, 천연고무)등과 같은 섬유재질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제품에 한글표시사항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나요?

▶ 카페트, 러그, 양탄자 제품이 파일직물인 경우 뒷면 재질은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고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Q4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치수의 범위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다.” 치수를 어떻게 표시해야하는 건가요?

▶ 각 섬유제품에 있어서 KS K 0051(성인여성복의 치수)표준에 따라 치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표시 방법에는 기본 신체 치수(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에 대한 표시와 제품 치수(제품의 실제 치수)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를 표기할 수는 있으나 기본 신체 치수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5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내용 중 표기사항을 보니 제조년월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박스에 포장되어있는 침구류의 경우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에 제조년월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으면 최종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별도표기’로 표시하여도 무방한가요?

▶ 가능합니다.
- 제품의 라벨에 제조년월을 기재하신 경우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중복하여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별도표기’로 표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6 모자에 넣을 케어라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케어라벨을 전문 영어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 ▶ 영문 라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국문/영문 둘 다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어, 가정용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Q7 성인용 의류의 KC 인증 기준, 절차, 비용 문의드립니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몰'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 ▶ 문의하신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시험절차 및 비용은 시험 가능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